- 목적	공장·건설공시장·도로·철도 등 일상생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
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
- 고려 요소	<ul> <li>소음·진동배출시설: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·기구·시설,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소음·진동방지시설: 소음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방음시설(防音施設):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소음발생건설기계: 건설공시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생활소음 규제 기준 참조(소음·진동 관리법 시행규칙)</li> </ul>	- 완충녹지 등의 설치 - 방음벽 및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- 소음발생 저감 시설의 설치